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18. 10.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기획
2.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3. 역량기반 기초교육을 통한 교양 및 비교과 교육 개편
4. 경험기반 전공교육을 통한 전공교과목의 특성화 강조
5. 비경계 융합교육을 통한 SuperStar College 고도화
6. 다원적 협업모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산업, 글로벌 가치 확산
7.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 확산
8. 그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사업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팀을 둔다.

**제4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의 임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역할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사업단 예산 편성 및 집행, 보고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임용추천 및 근무평정
4. 사업단 내 시설 및 공간 관리
5.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제5조(사업단 행정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팀장과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0.>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③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외부인사(회계전문가 1명 포함)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배분 및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확산, 협력 및 중복에 관한 검토
4. 관련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

**제10조(설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학생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0.>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
3.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4.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및 컨설팅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자체평가는 반기마다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재정 및 회계)** ① 사업단 재정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② 사업단 재정은 본교 회계의 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사업단 회계는 관계법령,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및 본교 재무 및 회계규정을 따르며,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①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인사 및 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소정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단 사업비 집행지침 등에 따른다.

## 제6장 보칙

**제15조(운영세칙)**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